

코로나19 상황 문화시설 대관 및 운영 기준

시행 2020. 08. 01.

개정 2021. 04. 19.

개정 2021. 07. 30.

개정 2021. 11. 19.

개정 2022. 4. 28.

기관·학생 단체의 문화시설 대관 요구 충족 및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의 일상회복 추진 계획에 따라 **코로나19 상황의 문화시설 대관 및 운영 기준을 운영하고자 함**

□ 관련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(대학) 안내[대학학사제도과-4501(2022.4.20.)]
-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[장학복지과-4333(2022.4.22.)]

□ 문화시설 대관방안

- **관리대상:** 문화관(대강당, 중강당, 전시실), NH농협두레문예관, 풍산마당
- **기본원칙**

- (행사 취소 동의) 정부 방역 수칙 강화 시 행사 취소를 사전 동의
- (방역지침 준수) 정부 및 서울대학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지침(가이드라인), 생활 방역 수칙 등 준수

※ 단, 제재 조치 등은 정부 방역 지침 변동 시 해당 지침에 따름

※ 문화관·풍산마당은 코로나19 대관 기준 제정 이전과 같이 공문 신청, NH농협두레문예관은 예약하사 사이트(<https://ssims.snu.ac.kr>)로 신청

○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대관 운영 기준 <삭제>

※ 추후 정부 방역 수칙 강화 시 재개 가능

□ 대관 시 유의사항

- 출·입구 및 대기실 등에 손소독제 비치
- 마스크 착용
 - 단, 공연자, 악기 연주자가 공연을 할 때 등 정부 방역 수칙 예외사항 제외
- 취식 금지
- 행사 주최기관에서 행사 종료 후 일상 소독 권고
 - 소독약, 소독티슈 등으로 공용물품, 손잡이,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등 사용한 공간 소독
- 행사 전·후 환기 권고
- 가급적 좌석 한 칸 띄워앉기 권고

☞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

- (처분기간) 2022년 2월 15일부터 ~ 별도해제 시까지
 - 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위반 50만원, 2차 위반 100만 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)
- (마스크 종류)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 착용
 - * 전자식 마스크 :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 - *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인정
- (착용법)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

※ 예외상황

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등